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참 고</h1>	
		배포일시	20 18. 5. 10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김경은, 주무관 하철호 ☎ (044) 201-3384, 3390
	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	담당자	·과장 진경식, 사무관 안종연, 주무관 정화영 ☎ (02) 2133-7190, 7201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시공사 선정 관련 이익 제공 등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 지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,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*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
 - * (도시정비법 제132조)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
 - * (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)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

- 국토교통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를 개선*한바 있다.
 - * 이사비,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, 특화 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 포함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.

-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, 관리·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태가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,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,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경은 사무관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